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3426 명예훼손
피 고 인 맹00 (830124-00000000), 회사원
주거 인천 00구 00000로 000, 000동 0000호
등록기준지 서울 00구 00동 000-0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김00, 김00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노201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00 _____

 대법관 김00 _____

 대법관 오00 _____

주 심 대법관 서00 _____